#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70 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서왕진・김정호・차규근

정춘생・조 국・신장식

김선민 · 김재원 · 박은정

황운하 · 강경숙 · 이해민

김준형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

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,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.

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, 진동, 경관 훼손,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,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
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,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·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,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

높아져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.

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,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고,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을 강화하여,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탈탄소 경제·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지 조성과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며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로 하여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 풍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- 다. 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,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 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둠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- 라.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 보망을 구축·운영하고,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,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 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바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사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

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,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0조).

- 아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 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 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(안 제21조 및 제22조).
- 자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(안 제28조).
- 차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,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,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,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·운영하고,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·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,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).

법률 제 호

##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입지 조성과 통합적인 행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해상풍력발전의보급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,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해상풍력발전사업"이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바닷가 중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.
- 2. "해상풍력발전시설"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,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3. "해상풍력산업"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·건설·정비·해체 ·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·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- 4. "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"(이하 "예비지구"라 한다)란 풍황,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- 5. "해상풍력발전지구"(이하 "발전지구"라 한다)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지구를 말한다.
- 6. "기본계획"이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입지정보·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, 해상 풍력발전기의 용량, 전력계통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) 연계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정한 기초 계획을 말한다.
- 7. "해상풍력발전사업자"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
- 8. "개발실시계획"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 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.
- 9. "풍황(風況)"이란 특정 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 한 평균풍속, 주풍향,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 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・

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·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
-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, 해양안전의 확보, 수산업 및 그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 풍력을 위한 정보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는 교육활동,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해 해상풍력발 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 보전, 해양안전 확보,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에 따른다.

##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

제6조(해상풍력발전위원회)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·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
- 2.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·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
- 4. 제19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사항
- 5.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·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- 6. 이 법에 따른 결정·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신고·협의·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
- 7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- 8. 예비지구·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- 9.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·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제9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

-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- 1. 당연직 위원: 기획재정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림 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위촉위원: 에너지·자원, 환경·해양환경, 수산업, 해상교통, 국토이용, 과학·기술, 전력계통, 회계·금융 및 갈등조정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-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,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.
-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

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⑧ 위원회의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・의결할 수 있다.
-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·검토를 하거나 분쟁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.
- ⑩ 그 밖에 위원회,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피성년후견인
  - 2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
 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2.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9조(사무국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"관계기관"이라한다)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업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

- 제10조(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, 어업활동, 환경·해양환경, 해상교통, 전력계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·분석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 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예비지구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급기본계획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
  - 2.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
  - 3.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
  - 4.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
  - 5. 해양환경·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  - 6.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  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(이하 "허가지역"이라 한다)을

-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관할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이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럼 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.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 기·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

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.

- 8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예비지구의 지정해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.
  -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  -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기본계획의 수립·확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.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  - 1. 예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

- 2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
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
- 4.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
- 5. 해양환경성ㆍ해상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
- 6.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안 또는 기본계획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계획 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확정·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어업인단체, 주민대표,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예비지구가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위치하거나,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심의·의결을 거쳐 관할 민관협의회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1.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
  - 2. 발전지구의 지정·변경지정·지정해제 및 그에 따른 어업활동, 환경·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
  - 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
  - 4.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안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·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어업인, 주민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(이하 "이해관계자등"이라 한다)이열람하게 하고,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4항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결과 및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결과를 통보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) ① 발전지구에

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의 투자 규모,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참여대상 주민 및 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의 투자규모·수익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6조(발전지구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 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
  - 2.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
  - 3.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
  - 4.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민관협의회

-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·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1. 도로 · 철도 · 교량 · 운하 · 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
- 2. 하천유수(河川流水)의 진로변경,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(浚渫),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·양식업권의 설정
- 3.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또는 개축
- 4. 토지의 개간, 지반의 굴착·매립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발전지구 계통의 연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(이하 "송전사업자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

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(이하 "공동접속설비"라한다)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「전기사업법」 제15조에 따른 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발전지구의 지정해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

제19조(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 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
- 2.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
- 3.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
- 4.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의가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제33조에 따른 실증단지 조성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2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

하게 된 경우

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
- 4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. 다만,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6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
-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 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(工區)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- 1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
  - 2.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
  - 4.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
  - 5.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·교량·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 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  - 6. 해양환경·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  - 7.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
  - 8. 어업권 · 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
  - 9.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

-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
- 2.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·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
-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・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・군수・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・의결을 거친 경우에는
-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・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.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
- 2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위원회
- 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- 4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
- 5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
- 6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

- 7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회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①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8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) ① 해상품력 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「환경영향평가 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- 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관계자등이 열람하게 하고,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에 따른 해 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신고·지정 또는 결정·면허·협의·해제·심의·처분 등(이하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.
  - 1. 「경관법」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

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

-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3. 「광업법」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
- 4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
- 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6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
- 7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8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
- 9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·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

- 10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
- 11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 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12.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
- 13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허가
- 14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의 개설허가
- 15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 지정의 해제
- 1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·신고
- 17.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・신고
- 18. 「수도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19.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
- 20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
- 2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- 2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

- 23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
- 24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인가
- 25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
- 26.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- 27. 「항로표지법」 제9조제6항,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・관리의 허가
- 28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29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
- 30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 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
-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

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-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실시계획의 승인취소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,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

- 2.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 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천재지변,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·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·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, 수립·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4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 어업권·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·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

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 제25조(착공 신고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준공인가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.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

-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·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 다.
- 제27조(풍황계측기의 이용 등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0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먼저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,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

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)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·사용허가
  - 2.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
  - 3. 「농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
  -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
- 5. 「건축법」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제30조(입지 적정성 평가)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

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"인가등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고, 인가등을 할 때에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
- 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
- 3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및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

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

- 제31조(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
  - 2.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
  - 3.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
  - 4.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
  - 5.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 개발을 촉진

- 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·종합적으로 관리·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,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(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·운영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 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실증단지의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

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(전문연구기관의 지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·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·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5조(국제협력 추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

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36조(수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상풍력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·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
  - 2.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·지도·대외홍보·전시·연수 또는 상담알 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
  - 3. 국내외에서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·운영하거 나 전시장에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출품하는 자
  - 4.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
- 제37조(항만시설의 지원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하거나 신설·증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예비지구·발전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「소재·부품·

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5 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38조(수산업 등의 지원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·사용료 중 「배타 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·사용료는 「교통시설특별 회계법」 제7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 법」 제46조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,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·연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벌칙

- 제39조(벌칙)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 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 및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·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중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0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같은 조 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.